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08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송기헌・신정훈・임호선

송언석 · 이광재 · 안호영

송재호 · 위성곤 · 윤재갑

김성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충북의 진천·음성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기초 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 및 원할한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인접한 시·군·구간 협의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·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, 그 기능이 광역자치단체인 시·도의 자문기구와 유사하여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행정처리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.

이에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친 경우 혁신도시행정협의 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시·군·구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혁신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들어서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혁신도시자치단체협의회(이하 "혁신도시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고, 혁신도시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협의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. 다만, 혁신도시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협의회의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u>다.</u>